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87호 2015. 6. 24.(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5-76호 도로명주소 고시.....2
- 거창군 고시 제2015-77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3
- 거창군 고시 제2015-78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4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5-580호 웅양취·정수장 취수시설 설치공고.....5
- 거창군 공고 제2015-587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 거창군 공고 제2015-58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12
- 거창군 공고 제2015-595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3

회 담									
--------	--	--	--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1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 인하며 같은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9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조경수 식재)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면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91외 1필지 (산93-1)	62,995	62,316	51,634	48,119	조경수 식재	88,451	61,908	2014.02.19 ~ 2015.06.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25, 선우하이파크 1001호	이인화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 인하며 같은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전작물 재배)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면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79	21,620	4,930	전작물 재배	14,600	2014.04.08 ~ 2015.06.30	2014.04.08 ~ 2015.07.31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750	신영순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4)

응양취·정수장 취수시설 설치공고

응양 취·정수장의 준공에 따라 수도법 제7조의제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수시설 설치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거 창 군 수

1. 취수시설의 명칭 : 응양 취수장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 위 치 : 경남 거창군 응양면 죽림리 252-9번지 일원
 - 용 량 : 900m³/일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도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한 규정 준수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가조면 도리(10필지 342,671㎡) 일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84] 또는 E-mail[dorakrd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6.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 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가조면 도리(10필지 342,671㎡) 일부

: 도리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

⇒ 가조면 석강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6. 19. ~ '15. 7. 9.

2)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평가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표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읍면명	리명칭	구 역
거창읍	상림리에서 가지리까지	(생략)	거창읍	상림리에서 가지리까지	(현행과 같음)
주상면	도평리에서 남산리까지	(생략)	주상면	도평리에서 남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용양면	동호리에서 한기리까지	(생략)	용양면	동호리에서 한기리까지	(현행과 같음)
고제면	농산리에서 궁항리까지	(생략)	고제면	농산리에서 궁항리까지	(현행과 같음)
북상면	갈계리에서 창선리까지	(생략)	북상면	갈계리에서 창선리까지	(현행과 같음)
위천면	장기리에서 모동리까지	(생략)	위천면	장기리에서 모동리까지	(현행과 같음)
마리면	영승리에서 하고리까지	(생략)	마리면	영승리에서 하고리까지	(현행과 같음)
남상면	춘전리에서 임블리까지	(생략)	남상면	춘전리에서 임블리까지	(현행과 같음)
남하면	둔마리에서 지산리까지	(생략)	남하면	둔마리에서 지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신원면	수원리에서 와룡리까지	(생략)	신원면	수원리에서 와룡리까지	(현행과 같음)
가조면	석강리	종래 석강리 일원	가조면	석강리	종래 석강리 일원 및 종래 도리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
	기 리에서 일부리까지	(생략)		기 리에서 일부리까지	(현행과 같음)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가북면	우혜리에서 용산리까지	(생략)	가북면	우혜리에서 용산리까지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5 - 588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6월 19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전작물(고추) 재배
2. 사업 지구명 : 하고지구
3. 위치 :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146-2(임)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2,250㎡
신청면적 2,250㎡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3,5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06 ~ 2015. 05. 31(12개월)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가. 201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6조(기부 또는 보조제한) 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
- 나.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활동범위(안 제1조~제3조)

-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 수행 지원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정의 및 활동범위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 지원대상은 경찰서에 등록된 방범대와 연합회로 하고,
- 방범활동 운영비, 순찰 복장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함

다. 지도 및 감독 (안 제7조)

- 예산 목적 외 사용 지도 및 감독
- 연중 활동 실적 평가 및 반영

라. 포상, 교육

-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 포상
- 경찰서와 협조하여 교육실시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팩스 940-3169), 전화(940-3183) 또는 E-mail(hyungo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 읍·면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거창군 자율방범연합회”란 제1호에 따른 거창군 읍·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및 활동범위) ① 거창군 읍·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가 속한 지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다른 지역까지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및 신고활동
2. 교통, 환경 등 기초질서지킴이 계도활동
2. 지역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재해, 재난 발생시 복구·구호
3. 청소년 선도와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일시보호
4. 경찰기관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제4조의 임무를 1년 이상 수행해 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방법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법활동 운영비
 2. 방법순찰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방법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법대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방법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연합회 구성) 읍·면 방법대 간의 정보교류,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연합회) ① 연합회는 읍·면 방법대의 회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방법대 간의 효율적인 순찰활동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방법대와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법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